

의안
번호

1241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1
----------	------

발의연월일: 2026. 2. 26.

발 의 의 원: 전홍표 · 김묘정 · 김상현 · 서명일 · 정보빈
이우완 · 이원주 · 이해련 · 최은하 ·
홍용채 의원(10명)

1. 제안이유

수난구호 참여자의 교육·훈련과 대시민 해양안전 홍보·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해양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개정: 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 목적에 맞게 용어 정의를 수정하고 법령 재기재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제10호)

다. 수난구호 참여자의 교육·훈련과 시민 해양안전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라.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 실익이 낮은 조문을 삭제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상”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을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교육·훈련 및 홍보 활동을”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을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으로, “선박등”을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중 “수난구호활동”을 “수난구호 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난구호비용”을 “수난구호 비용”으로, “수난구호업무”를 “수난구호 업무”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홍보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수난구호의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조·구난·응급처치·수상 및 수준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2.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 및 협력 훈련

3. 해양레저 이용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 교육

4.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해양문화 행사 및 해양레포츠 행사와 연계한 안전 캠페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중 “수난구조활동”을 “수난구조 활동”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u>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상”이란 <u>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u>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u>수상에서 조난된</u> 	<p><u>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수상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교육·훈련 및 홍보 활동을 -----.</u></p> <p>제2조(정의) ----- -----.</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
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
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
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
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
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
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
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
·충돌·화재·기관고장 또
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
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
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
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
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
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 (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10.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 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 ~ ③ (생략)

④ 수난구호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경비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를

9. -----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
---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

<삭 제>

제6조(지급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난구호 활동-----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

----- 수
난구호 비용 -----
----- 수난구호 업무---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0조(포상) 시장은 수난구조활동에 이바지한 자 중에서 공적이 있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교육·훈련, 홍보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수난구조의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조·구난·응급처치·수상 및 수준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2.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 및 협력 훈련
3. 해양레저 이용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 교육
4.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해양문화 행사 및 해양 레포츠 행사와 연계한 안전 캠페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수난구조 활동

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삭 제>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분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7.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8.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

제8조(임무)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구난 활동의 지원
2.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 선박 등의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고 예방 활동의 지원
3.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관리·지원 및 교육·훈련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급)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이하 “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대여 또는 지급하거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①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 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대 및 구급대의 합동훈련 또는 합동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조대 및 구급대에 관한 정보교환 및 상호연락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조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 보관·반환·공매 및 구호비용의 산정·지급·징수, 그 밖에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10.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 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시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직접 사용된 유류비와 활동비, 장비 및 물품 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의 지원경비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④ 수난구호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경비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자 중에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의사업법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전홍표 의원)

의사업법담당관-1013(2026. 2. 10.)호와 관련하여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조례 제·개정 개요

조례안	발의자	부서 검토의견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홍 표 의 원	○ 검토부서: 수산과 ○ 관련법령 저촉 여부: 해당없음 ○ 재정부담 여부: 있음 ○ 종합의견: 붙임 검토보고서 참조

- 붙임 1.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1부.
2. 붙임 서류 각 1부. 끝.

창 원 시



주무관 홍현정 의회협력팀장 박영수 정책기획관 전결 2026. 2. 13. 김태호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관-2468 (2026. 2. 13.) 접수 의사업법담당관-1110 (2026. 2. 13.)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정책기획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hong3582@korea.kr / 비공개(5)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홍표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 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발의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 상정시기 :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26년 3월 예정)
- 발 의 자 : 전홍표 의원(건설해양농림위원회)
- 제안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 수난구호 참여자의 교육·훈련과 대시민 해양안전 홍보·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해양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칭 변경)** 신설 조항으로 해양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 수용할수 있도록 『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함
 - **(조문신설)** 수난구호 참여자의 교육·훈련과 시민 해양안전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조문수정)**
 1. “수상”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을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교육·훈련 및 홍보 활동으로 수정함
 2. 제2조의 9호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을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으로 선박등”을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으로 수정함
 3. 제6조제4항 중 “수난구호활동”을 “수난구호 활동”으로 수정함

4. 제7조제1항 중 “수난구호비용” 을 “수난구호 비용” 으로, “수난구호업무” 를 “수난구호 업무” 로 수정함
5. 제10조 중 “수난구호활동” 을 “수난구호 활동” 으로 수정함

- (조문삭제)

1. 법령 재기재 사항으로 삭제함(안 제2조제1호부터제8호까지)
2.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 실익이 낮은 조문을 삭제함(안 제11조)

□ 검토내용

○ 관계법령 저촉여부 : 저촉사항 없음.

○ 재정 부담

- 재정추계 : 10백만원 / 年 (교육비 6백만원, 훈련비 4백만원)

- ① (강사료) 교육비 : 구조·구난·응급처치교육 (470천원/8hr×2회= 940천원
수상 및 수중 안전교육 (220천원/8hr×2명×12회= 5,280천원)
- ② (임차료) 훈련비 : 관계기관 합동모의훈련 (200천원×10척×2회= 4,000천원)

[재정부담 사항 검토]

제8조의2(교육·훈련 및 홍보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수난구호의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창원해양경찰서 예산 지원 현황 (보조사업자: [창원해양재난구조대 / 472명](#))
⇒ 2025년 기준 : 교육비용 (352명 / 890만원) / 훈련비용 (62명 / 402만원)

☞ [한국해양구조협회\(회원 228명\)](#) 등 교육·훈련 등 재정추계는 10백만원으로 기존 창원해경 지원예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회원 중복여부 평가

□ 전 부서 의견조회 결과

○ 조회기간 : 2026. 1. 7. ~ 1. 9. (3일간)

○ 회신의견

부서명	의견	비고
예산담당관	-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유사 단체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연평균 소요액 내에서 철저한 집행 관리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면밀한 효과 분석필요	

□ 종합 부서의견 : 전부 수용

- 전국적으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는 다수 있으나 교육·훈련·홍보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으로, 신설하려는 「제8조의2」는 수난사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과 모의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또한 동 조항은 관련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재정 여건과 사업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의원 발의 안	검토의견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u>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u> 등에게 <u>경비를</u>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u>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교육·훈련 및 홍보 활동을</u>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문구 수정함.</p>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p>제2조(정의) (생략)</p> <p>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p> <p>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p> <p>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p> <p>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법령 재기재로 삭제</p> <p>법령 재기재로 삭제</p> <p>법령 재기재로 삭제</p> <p>법령 재기재로 삭제</p>
--	--	---

<p>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p>	<p><삭제></p>	<p>법령 재기재로 삭제</p>
<p>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p>	<p><삭제></p>	<p>법령 재기재로 삭제</p>
<p>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p>	<p><삭제></p>	<p>법령 재기재로 삭제</p>
<p>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p>	<p><삭제></p>	<p>법령 재기재로 삭제</p>
<p>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p>	<p><삭제></p>	<p>법령 재기재로 삭제</p>
<p>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p>	<p><삭제></p>	<p>법령 재기재로 삭제</p>
<p>9. “수난구조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조활동에 <u>참여한</u> 민간인이나 수난구조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u>선박</u>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p>	<p>9.“수난구조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조 활동에 <u>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u> 민간인이나 수난구조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u>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u>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p>	<p>문구 수정함</p>
<p>10.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삭 제></p>	<p>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삭제</p>
<p>제6조(지급기준) ① ~ ③ (생략)</p>	<p>제6조(지급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p>	

④ 수난구호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경비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수난구호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경비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 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및 홍보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수난구호의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조·구난·응급처치·수상 및 수중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2.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 및 협력 훈련
3. 해양레저 이용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 교육
4.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해양문화 행사 및 해양레포트 행사와 연계한 안전 캠페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구 수정함

문구 수정함

<p>제10조(포상) 시장은 <u>수난구호활동</u>에 이바지한 자 중에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p>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포상) 시장은 <u>수난구호 활동</u>에 이바지한 자 중에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p> <p><삭 제></p>	<p>문구 수정함</p> <p>실익이 없으므로 삭제</p>
--	--	----------------------------------

참고 2

창원 수난구조 단체 현황

구분	창원해양재난구조대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남동부지부)	비고
설립근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대표자	구조대장 : 전승윤	협회장 : 전승윤	
소재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레포츠펙터 2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레포츠펙터 2층	
설립연도	2025년 1월 3일	2013년 1월 29일	
등록형태	비영리 민간자원봉사 단체	비영리 민간자원봉사 단체	
단체성격	해양재난구조지원, 수난구조 협력, 수색구조 지원 등	해양재난구조지원, 수난구조 협력, 해양환경 정화	
인원구성	472명 ① 선박구조대 208명 ② 드론수색대 39명 ③ 수상구조대 51명 ④ 수중구조대 39명 ⑤ 봉사단 91명 ⑥ 항공수색대 12명 ⑦ 응급구조대 32명	228명 ① 특수구조대 50명 ② 창원구조대 34명 ③ 마산수색구조대 49명 ④ 구난대 95명	
활동실적 및 예산집행	【창원해양경찰서 예산지원】 - 출동 : 117명 / 1,023만원 - 순찰 : 44명 / 217만원 - 교육 : 352명 / 890만원 - 훈련 : 62명 / 402만원	【해양구조협회 자체운영】 수입 : 8,891만원 - 단체회비 : 2,500만원 - 교육사업 : 6,056만원 - 기타활동 : 153만원 - 기타 : 182만원 지출 : 8,021만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 3.] [법률 제19911호, 2024. 1. 2., 제정] 제정에 따라 기존 한국해양구조협회 사무와 중복 됨

참고 3

시·군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현황

시·군명		제·개정일	유사조항	시·군명		제·개정일	유사조항
경상남도	도청	2022-11-03	무	인천광역시	도청	2020-11-09	무
	거제시	2021-03-25	무		중구	2020-07-03	무
	고성군	2021-03-22	무		강화군	2025-12-31	무
	남해군	2020-12-08	무		용진군	2021-05-18	무
	사천시	2021-02-10	무		남동구	2019-11-08	무
	창원시	2022-11-15	무		울산광역시	시청	2020-09-24
	통영시	2020-06-30	무	울주군		2024-09-12	무
	하동군	2021-07-16	무	북구		2020-12-31	무
부산광역시	도청	2019-07-10	무	남구		2020-12-18	무
	수영구	2024-09-10	무	동구	2019-05-08	무	
	해운대구	2020-11-02	무	경기도	도청	2021-01-08	무
	사하구	2020-09-25	무		화성시	2025-07-11	무
	서구	2020-05-06	무		안산시	2024-04-03	무
	영도구	2019-12-31	무		평택시	2021-04-16	무
	남구	2019-12-24	무		시흥시	2018-02-14	무
	강서구	2019-10-16	무		강원도	도청	2024-12-27
기장군	2019-08-28	무	동해시	2024-07-12		유	
충청남도	도청	2020-12-30	무	강릉시		2024-03-27	무
	서산시	2020-11-10	무	원주시		2023-05-19	무
	홍성군	2019-11-15	무	삼척시		2021-02-26	무
	서천군	2019-10-21	무	양양군		2019-07-15	무
	태안군	2019-08-09	무	속초시		2019-06-28	무
	보령시	2018-08-10	무	고성군		2019-04-09	무
	당진시	2021-10-29	무	충청북도	음성군	2016-05-25	무
	전라남도	본청	2021-05-20		무	전라북도	도청
순천시		2025-09-30	무	부안군	2025-11-10		무
보성군		2025-04-30	무	군산시	2020-09-29		무
고흥군		2025-03-17	무	고창군	2019-12-30		무
영광군		2024-12-27	무	경상북도	도청		2019-10-31
목포시		2023-12-18	무		포항시	2019-12-10	무
신안군		2023-03-02	무		경주시	2019-07-11	무
광양시		2021-04-07	무		영덕군	2019-02-19	무
여수시		2020-10-12	무		울진군	2017-11-08	무
강진군		2020-04-16	무		울릉군	2016-12-29	무
완도군		2020-04-13	무	제주도	도청	2023-10-12	무
진도군		2019-12-31	무		해남군	2019-10-29	무
영암군		2019-12-12	무		무안군	2019-09-09	무
함평군		2019-11-29	무	전라남도	장흥군	2017-03-09	무

- 붙임 1.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 (안)
 - (신설) 제8조의2(교육·훈련 및 홍보의 추진 및 지원)
 - 제1항: 시장이 교육·훈련·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제2항: 관련 법인·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나. 비용발생요인

- 수난구호 참여자(해양재난구조대, 관련기관·단체 등)의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추진/지원 비용 발생
- 시민 해양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추진/지원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본 비용추계는 조례안 제8조의2 신설에 따른 “신규 추진·지원 가능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함
- 사업은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재정여건 및 사업 필요성에 따라 연도별 탄력 운영 가능함
- 기존 유관기관(창원해양경찰서) 예산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내용·집행항목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단가 및 규모 산정 근거(※ 창원 해양재난 구조대 자료 기반)
 - (교육) 2025년 기준: 교육 352명 / 8,900천원(890만원) 집행 사례
 - (훈련) 2025년 기준: 훈련 62명 / 4,020천원(402만원) 집행 사례
- 본 추계는 연평균 소요액을 10,000천원(교육 6,000천원, 훈련 4,000천원)으로 가정하며, 향후 대상 인원·횟수·단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음(물가상승률 미반영)

■ 소요 재원 추계

(단위: 천원)

구분	산출 근거	연간 소모액	비고
합계	합계	10,220	
교육비 (교육·홍보 포함)	구조·구난·응급처치·수상/수중 안전교육 · 구조·구난·응급처치 교육 470,000원(강사료) /8시간 * 2회 · 수상/수중 안전교육 220,000원(강사료)/8시간*2명*12회	6,220	
훈련비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및 협력 훈련 · 200,000원 * 10척 * 2회	4,000	

■ 연도별 추계 (5개년)

(단위: 천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비고
지원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교육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 훈련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사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일반회계)

※ 사업 추진방식(직접/보조) 및 편성항목은 예산편성 시 확정

3. 작성자 :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장 홍성호



창 원 시 의 회



수신 창원시장(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전홍표 의원)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6. 2. 2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사항: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례안	발의자	상정시기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임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정책지원관 유영은 입법지원팀장 장설민 의사기록팀장 반혜정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전결 2026. 2. 10.

협조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시행 의사입법담당관-1013 (2026. 2. 10.)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의사입법담당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3 팩스번호 055-225-4743 / cost403@korea.kr / 대국민 공개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 .

발 의 의 원: 전홍표 의원

찬 성 의 원:

1. 제안이유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수난구호 참여자의 교육·훈련과 대시민 해양안전 홍보·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해양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개정: 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 목적에 맞게 용어 정의를 수정하고 법령 재기재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제10호)

다. 수난구호 참여자의 교육·훈련과 시민 해양안전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라.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 실익이 낮은 조문을 삭제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상”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교육·훈련 및 홍보 활동을”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을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으로, “선박등”을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중 “수난구호활동”을 “수난구호 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난구호비용”을 “수난구호 비용”으로, “수난구호업무”를 “수난구호 업무”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홍보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수난구호의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조·구난·응급처치·수상 및 수준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2.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 및 협력 훈련

3. 해양레저 이용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 교육

4.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해양문화 행사 및 해양레포츠 행사와 연계한 안전 캠페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중 “수난구조활동”을 “수난구조 활동”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u>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상”이란 <u>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u>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u>수상에서 조난된</u> 	<p><u>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수상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교육·훈련 및 홍보 활동을 -----.</u></p> <p>제2조(정의) ----- -----.</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 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 (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10.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 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 ~ ③ (생략)

④ 수난구호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경비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를

9. -----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
---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

<삭 제>

제6조(지급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난구호 활동-----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

----- 수
난구호 비용 -----
----- 수난구호 업무---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0조(포상) 시장은 수난구조활동에 이바지한 자 중에서 공적이 있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교육·훈련, 홍보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수난구조의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조·구난·응급처치·수상 및 수준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2.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 및 협력 훈련

3. 해양레저 이용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 교육

4.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해양문화 행사 및 해양 레포츠 행사와 연계한 안전 캠페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수난구조 활동

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삭 제>